



조정중재사례 소개

명예훼손 사례 1

■ 노조원에 대한 보복인사 보도, 반론으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방송사의 앵커팀장인 신청인이 노조 파업에 참가한 모 앵커에게 앵커 교체 사실을 통보하면서 “윗선의 평가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의 인사평가와 보도국 관련 간부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했다”고 말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됐다.

명예훼손 사례 2


■ 성추행 의혹보도, 정정과 기사삭제로 조정성립 및 손해배상 직권조정결정

B신문사는 제빵사인 신청인이 제빵보조로 근무하는 여직원과 성추행 사건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1·2심의 무죄판결의 내용과 이를 반박하는 여성단체의 주장을 보도했다.

신청인은 1·2심의 무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에는 자신이 성추행을 한 것처럼 적시됐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관련 인터넷기사의 삭제로 조정이 성립됐으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했다.

@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언론사람」을 우연한 기회에 처음 읽었습니다.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보면서 곧 있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단 1%라도 편파적이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를 할 수 없도록 위원회가 공명정대한 조정과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아영)
- ‘조정은 열린 마음과 정성이 중요’ 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김영혜 상임위원님의 인터뷰 기사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니 존경스러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언론이 너무 선불리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지도 않은 사건에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한다면 더욱더 사회적 갈등이 조성되니 언론은 신중하게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김석준)
- 독자의 입장에서 역시나 언론분쟁 경험기가 굉장히 크게 와 닿습니다. 저도 창업을 한 사람 입장에서 언론에 홍보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 정정보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사 한 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특히나 10월호 사례자의 경우는 본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사가 실려서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분쟁 경험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우)